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가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9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2호 타목 신설)	2
※ 참고자료	
1.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7
2. '18년~'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현황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Ⅲ. 검토의견

1.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 카. (생략) <u><신설></u> 타. ~ 선. (생략)	제2조(기능)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카. (현행과 같음) <u>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u> <u>파. ~ 어. (현행 타목부터 서목까지와 같음)</u>

나. 검토의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¹⁾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²⁾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개발도상국가 지원, 국내 과학기술자의 외국인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참고 1]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이처럼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정부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중에 하나

1)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장비,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³⁾의 심의대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고(자문회의),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심의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차.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과학 기술 주요 정책중에 하나임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미·중 기술패권 등 국가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성격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건 심의시 「정부조직법」 제30조⁵⁾에 따른 외교부의 소관 사무로 보이는 사항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는데 현재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외교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⁶⁾ 동 개정안에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6호, 2023. 3. 2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 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현재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는 외교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해 이견이 있는 상태임.

문 의 처
02)6788-5229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제5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심의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2조제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참고1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R&D)	▫ 해외우수연구기관과 양자 및 다자간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해외 선진 기술 확보, 인력 교류 촉진 등 연구역량 강화	19,600
해외IT지원센터 운영	▫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 컨설팅 등 맞춤형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6,905
국제IT협력프로젝트 운영	▫ 정보화 정책 추진 국가를 대상으로 상대국과 공동으로 3년간 IT협력 프로젝트(정보화컨설팅, 교육, 실증 등) 수행을 통해 우리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여 양국 우호 증진 및 우리 ICT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911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운영	▫ 정부 간 협력 활동 추진 및 국내 정보통신방송 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신규개척 및 해외 진출 확대	2,371
국가간협력기반 조성(R&D)	▫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국제행사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23,385
국제협력네트워크 전략강화(R&D)	▫ 기 조성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발전시켜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	3,750
개도국정보이용환경 개선(ODA)	▫ 개도국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개도국의 디지털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ICT 교육장, ICT 라운지, 영상회의실 등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 콘텐츠를 제공 ▫ 해외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 개도국 ICT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정보화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산·학·연·관 간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여 ICT 협력 네트워크 구축	3,896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ODA)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특허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	3,573
개도국과학기술지원 (R&D, ODA)	▫ 개도국 문제 해결을 통한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과제에 한해 지속 지원	1,390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 (정보화)	▫ 주요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협력 기반을 통해 수요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우리 ICT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 강화 ▫ 국제기구 협력기반을 토대로, 협력국 디지털 전환 사업의 기획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후속 사업에 우리 ICT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확대	194
국제기구부담금 (정보화, ODA)	▫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기구의 부담금 납부를 통해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위상 제고	5,624
과학기술 국제부담금(R&D)	▫ 과학기술 정책·제도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과 영국간 협약에 따라 영국 대학에 국내 연수생 파견 및 석사학위과정 운영 관련 부담금 납부 ▫ OECD, GBIF, HFSP, WEF 등 국제기구 주도의 다자간 협의체에 참여, 국제 과학기술 규범 형성에 우리 입장 적극 반영 및 다자간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국내 연구자의 참여 지원	3,140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 국제기구(ITU·OECD 등) 의제 대응 및 정보통신방송분야 최신 정보 교류,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지원	2,681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 ESCAP 회원국은 자국의 핵심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구를 유치·지원함으로써 아·태 지역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 ▫ 우리나라는 ESCAP 회원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UN 산하 정보통신 교육기관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여 지원	94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24년 예산 기준임.

□ `18년 ~ `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A)		63,697	70,327	73,501	74,745	76,052
국제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수	국제공동 국제위탁 합 계(B)	253	308	318	229	131
		220	208	216	62	14
		473	516	534	291	145
비 율(B/A)		0.7%	0.7%	0.7%	0.4%	0.2%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KISTEP, 22.9.